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

목적

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·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.

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
[정원] 본 원의 입소 정원은 총 29인으로 한다.

[이용대상] 본 원의 이용대상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
[모집방법] 본 원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.

1. 노블인노인전문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
2. 노인장기요양보험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3. 현수막 및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한 기관 홍보

입소계약

[급여계약 등] ① 대표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대표자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③ 대표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. 다만, 제3장 제1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2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.

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
2. 장기요양 급여비용
3. 비급여비용 등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대표자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[이용료]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대표자가 정한다.

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“원”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③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〈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〉

급여 항목

구분	법정급여 1일 단가	일반	감경	감경	기초생활 수급자	비급여
1등급	고시 비용	20%	12%	8%	면제	* 식재료비, 간식비, * 입원 및 통원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
2등급	고시 비용					
3~5등급	고시 비용					

[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] 보호자가 제2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, “원”의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- 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② “원”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,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④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
- ⑤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
- ⑥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
- ⑦ 그 밖에 “원”의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 의무

[계약해지]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2조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2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 한 때
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5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